

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신대학교 학칙」 제1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교육과정이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부합하는 기본역량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표) ① 교양교육과정의 목표는 “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인성과 보편적인 교양 함양”을 목표로 하되,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8.01.)

②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는 “탁월한 학문 및 연구 능력 함양과 실천적인 지성인 양성”을 목표로 하되, 각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의 목표는 학과별 전공교육과정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. (개정 2023.08.01.)

③ 비교과교육과정의 목표는 “영성과 전문성에 대한 역량 극대화”를 목표로 하되, 본교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과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8.01.)

제3조(핵심역량) 「학칙」 제1조의 교육목적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핵심역량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융합지식 역량 | 2. 문화예술 역량 |
| 2. 성경적 세계관 역량 | 4. 경건실천 역량 |
| 5. 의사소통 역량 | 6. 협동능력 역량 |

제4조(역량중심 교육과정 설정) 본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이 역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.

① 핵심역량은 인재상, 산업수요, 사회적 흐름 등 대내·외 여건 분석, 학생 요구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,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에 반영한다.

② 전공역량은 인재상, 교계, 지역사회, 국가 산업 등 대내·외 여건 분석, 학문 변화 분석, 학생 요구 분석 등을 고려하여 전공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.

제5조(주관부서) 교육과정의 총괄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교양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양학과에서,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각 학과에서, 비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센터 및 연구소, 학과에서 실시한다.

제6조(용어의 정의)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과정”이라 함은 일정한 교육의 목표에 맞추고,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.
2. “교과목”이라 함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 단위를 말한다.

3. “편성”이라 함은 영역의 구분,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, 표준이수형태, 이수규정, 이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.
4. “이수”라 함은 개설된 교과목을 편성된 시간에 참여하고, 공부하여 마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 결과를 학점으로 부여받는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.
5. “운영”이라 함은 교과목 개설, 수업시간 편성, 담당교수 결정, 분반, 합반, 폐강 등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것을 총괄하여 말한다.
6. “신설”이라 함은 교과목을 신규로 개발하여 처음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.
7. “변경”이라 함은 교과목 영역, 국문·영문명칭, 학점구조, 이수학년·학기, 교과목 개요, 교과목 이수규정 등 제반 변경사항을 말한다.
8. “폐지”라 함은 나열된 교과목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.
9. “동일교과목”이라 함은 교과목명칭 변경 시 변경 전 교과목과 변경 후 교과목의 관계를 말한다. 이 경우 교과목의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변경 후 교과목의 이수는 변경 전 교과목의 재이수가 된다.
10. “대체교과목”이라 함은 교과목이 폐지되어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지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제2장 교육과정 편성

제7조(교육과정의 구분)

-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, 전공교육과정,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.
- ② 교양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교양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하되, 교양필수의 경우 역량별 핵심과정을 선별하여 교양필수로 지정하고, 교양 선택의 경우 학문 영역별로 분류하여 교양 선택으로 지정한다.
- ③ 전공교육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와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전공 선택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
- ④ 비교과교육과정에 관한 편성 및 운영은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편성단위)

- ① 교양교육과정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편성한다.
- ②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한다.
- ③ 전공 개편 또는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 변동자 등을 위하여 종료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편성원칙)

- ①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, 인재상 및 역량과 부합되고, 산업체, 교계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, 전공교육과의 연계성, 학문적 변화와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다.
- ②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기존 교과목의 개설, 운영 및 질적 수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존 교과목의 통합 또는 폐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교과목편성)

① 교과목은 주당 1시간씩 15주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편성한다.

다만, 실험실습, 실기, 체육 및 기타 교과목 중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점 당 시간을 예외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당 학점 단위는 1,2,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과목 성격 및 학위과정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편성학점) 전공별 교육과정별 편성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선택 교과목은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양교육과정 편성과 운영)

①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및 인재 상
2. 교양교육의 목표
3. 핵심역량 및 교양교육 로드맵
4.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
5. 학생 및 산업체,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
6. 교육성과의 환류

②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대학의 교육목표, 인재 상,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, 사회적 요구, 학문적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. 핵심역량의 설정 및 개선 절차는 (별첨 1)에 따른다.

제13조(전공교육과정 편성)

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및 인재 상,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
2. 학과 교육 목표 및 학과 전공 능력
3.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
4. 학생 및 지역사회, 산업체,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
5. 교육성과의 환류

② 전공필수와 전공 선택 교과목은 균형 있게 구성함을 권장하나 전공별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.

③ 각 학과 및 전공은 학과 및 전공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, 종합적 능력을 고려하여 전공능력을 설정하여야 한다. 전공능력의 설정 및 개선절차는 (별첨 2)에 따른다.

④ 교과목은 ‘이론 교과목’, ‘이론과 실험·실습·실기(이하 “실습”이라 한다) 병행 교과목’, ‘실습 교과목’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⑤ 전공 인원이 정원에서 미달한 경우에는 교과목 개설을 축소할 수 있다.

⑥ 전공필수 교과목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, 전공 선택 교과목은 다양한 전공교육의 심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편성한

다. 다만, 국가 자격 등을 위한 전공에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비교과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)

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영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의 구현, 대학 발전계획과 특성화 계획의 실천
2. 학과 교육 목적 및 목표와 인재 상 구현
3. 핵심역량 및 학과 전공능력 제고
4. 사회적 요구 및 학문적 변화 고려
5. 학생 및 지역사회, 산업체, 교계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 반영
6. 교육성과의 환류 반영

② 비교과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을 보완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편성원칙을 기반으로 편성한다.

제15조(복수전공 및 부전공)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「학칙」 제30조의 2 및 3 및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.

제3장 이수

제16조(이수단위)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개설 교과목의 학점으로 한다.

제17조(교양교육과정 이수)

- ① 학생은 교양학점에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최소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소 20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(별첨 3)에 따른다.
- ③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양학점의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의 20%이상으로 하여야하며 그 세부기준은(별첨3)에 따른다.(개정 2023.05.02.)

제18조(전공교육과정 이수)

- ① 학생은 전공필수 및 전공 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 세부기준은 (별첨3)에 따르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학과별로 변경될 수 있다.
- ② 졸업필수 학점 이수는 학칙 및 학칙 시행내규에 따른다.

제19조(복수전공 과정)

- ① 다른 전공의 전공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.
-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대상 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학과별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복수전공 학점이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(별첨 3)에 따르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학과별로 변경될 수 있다.

제4장 운영

제20조(교육과정 관리)

- ① 교무처 및 각 학과는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개편자료를 연도별로 철하여 보존한다.
- ② 확정된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
- ③ 교과목 운영계획서를 당해 학년도 시작 전에 작성하고,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제21조(교육과정 운영부서 및 위원회)

- ① 교육과정의 운영부서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
 1. 교양교육과정: 교양학과, 교양교육과정위원회
 2. 전공교육과정: 각 학과 및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
 3. 비교과교육과정: 센터, 연구소, 학과,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

제22조(교과목 개설 및 분반 기준)

- ① 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 편성표에 의한다. 다만,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과목이라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교양과목은 매 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, 수강인원이 60명을 초과할 때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③ 전공과목은 교과목당 1개 반을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전공과목 중 이론과 실습병행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60명을 초과할 때 분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④ 분반에 대한 인원의 기준은 학과별 상황 및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렴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.

제23조(폐강 기준)

- ① 폐강에 대한 기준은 학칙시행내규 제18조에 따른다.
- ② 폐강되는 과목의 시간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2주 분의 강의료를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.

제24조(수업시간표 및 강의정보제공)

- ① 교무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기수업 개시 20일 이전까지 수업시간표를 작성·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강의계획서 공고 시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 2023.08.01.)

제5장 교육과정 개편 및 평가

제25조(개편 시기)

- ①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회의 변화요구에 대응하고,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질 관리를 통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시 개편할 수 있다.
- ② 전공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계 및 지역사회요구, 교육수요자 요구,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개선과 신규 개발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편한다.

제26조(적용 대상) 개편된 교육과정은 다음 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.

제27조(교과목 명칭변경 및 동일교과목 지정)

- ① 교과목 명칭변경, 학점구조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편시행 직전 학년도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.
- ② 교과목 명칭변경 등 교과목의 차이와 변경이 있더라도 본질상 같은 교과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.

제28조(개편원칙 및 절차)

- ① 교육과정은 대내외 환경 및 학문 동향 변화, 교계 및 사회적 요구, 교육 수요자 요구 등에 따라 개편할 수 있다.
- ② 교육과정 개편은 정기 개편과 수시 개편으로 구분하며, 수시 개편의 경우는 일부 교과목의 신설, 폐지 및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.
- ③ 교육과정 정기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(주관부서) : 교육목적, 교육목표, 인재 상, 역량 등과 연계하고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
 - 2. 교육과정 개편 요구분석 및 연구(교양학과 및 전공) : 재학생, 졸업생, 산업계 설문조사 또는 의견 수렴, 학문적 변화, 사회적 요구, 관련 문헌조사, 교육과정 개선 및 개편 방향 연구
 - 3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(전공은 전공 교육과정위원회, 교양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)
 - 4.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(교육과정위원회, 교무위원회)
 - 5.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(총장) 및 통보(주관부서)
- ④ 교육과정의 수시 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(주관부서) : 교육목적, 교육목표, 인재 상, 역량 등과 연계하고 평가 및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
 - 2.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심의(교양/전공 교육과정위원회)
 - 3. 교육과정 개편안 심의(교육과정위원회, 교무위원회)
 - 4.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(총장) 및 통보(주관부서)
- ⑤ 교육과정 수시 개편의 개정 신청 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개편 사유
 - 2. 신·구 교과목 대비 표
 - 3. 폐지되는 교과목의 대체 인정 교과목과 경과 규칙
 - 4. 교육과정 개편안
 - 5. 관련 회의록
- ⑥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학과 전공별로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해당 학과 전공에서 주관하며 위원장은 해당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학과장이 선임한다.

제29조(교과목 개발)

- ①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, 그리고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.
- ② 교양교과목의 신규 개설 및 개선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,
- ③ 전공교육과정은 교계 및 사회적 요구 분석, 내외 환경 분석, 학문 동향 분석, 교육 수요자 요구 조사, 졸업생 진로 분석 등의 연구 결과 반영하여 전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.
- ④ 전공교과목의 신규 개설 및 개선은 학과 전공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,

제30조(교과목 폐지)

- ① 교양교과목의 경우 교양학과에서 수요조사, 교육성과평가, 만족도 조사, 교육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폐지 교과목을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하고 선정된 후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한다.
- ② 전공교과목의 경우 학과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 대상 교과목을 심의, 선정된 후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한다.

제31조(대체교과목 지정)

- ① 필수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. 대체교과목은 폐지대상 교과목 개설전공에서 신청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- ② 폐지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대체교과목 지정은 할 수 없다. 다만, 재입학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32조(학적 변동자의 교육과정 적용)

- ① 신 교육과정 적용 전에 입학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, 신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전공별 졸업학점은 구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학적 변동자가 이수한 교육과정별 이수 교과목과 학점은 그대로 인정하되, 이수 학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③ 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이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구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필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
제33조(학적 변동자의 교양과목 적용)

- ① 신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는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자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신 교육과정 적용 입학연도 전에 입학한 자로서 구 교육과정의 교양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구 교육과정에서 교양과목 일부를 이수한 자는 부족한 교양학점을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34조(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)

①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 및 환류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1. 교과목 담당 교원은 매 학기 수업종료 후 수강생들의 수업평가에 기초하여 강의개선 방안을 작성한 수업개선보고서(CQI)를 각 학과에 제출
2. 교육과정 성과분석, 개선실적, 개선 및 환류방안 도출(교양학과, 각 학과별 전공)
3.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 수립(교양학과, 각 학과별 전공)
4. 교육과정 개편 및 환류계획안 심의(교육과정위원회)
5. 개선교육과정 적용 및 개선된 성과 공유(교양학과 및 각 학과별 전공)

② 교육과정 평가 및 성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,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학과 및 각 학과는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반영한다.

③ 각 학과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된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및 확산하도록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1) 핵심역량 설정 및 점검/개선 절차

1. 핵심역량 설정 위원회 또는 TF팀(기획처에 주관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선정)
 - 대내외 여건 분석
 - 1) 외부여건분석: 국가 및 지역여건, 교계, 학문분야 동향 분석
 - 2) 내부여건분석: 학과 비전 및 특성화계획, 학과운영역량
 - 3) 교육수요자 요구분석: 재학생/졸업생/산업체 수요자 분석
 - 핵심역량 도출: 핵심역량 선정 및 정의, 하위역량 선정, 핵심역량과 교과목 연계
2. 교양교육과정위원회
 - 핵심역량 검토: 위원회 또는 TF팀이 도출한 핵심역량(안) 검토 및 의견제시
3. 교육과정위원회
 - 핵심역량 검토: 위원회 또는 TF팀이 도출한 핵심역량(안) 검토
4. 교무위원회
 - 핵심역량(안) 확정

(별첨2) 전공능력 설정 및 점검/개선 절차

1. 각 학과 전공 (또는 학과회의에서 결정된 전공교육과정 연구위원회)
 - 대내외 분석
 - 1) 외부여건분석: 국가 및 지역여건, 학문분야 동향 분석
 - 2) 내부여건분석: 학과 비전 및 특성화계획, 학과운영역량
 - 3) 교육수요자 요구분석: 재학생/졸업생/교계/산업체 등 수요자 분석
 - 전공능력 도출
 - 1) 교육목표 및 인재상 설정
 - 2) 전공능력 도출 및 확정
2. 학과 전공교육과정위원회
 - 전공능력 검토 및 심의: 연구위원회에서 도출한 전공능력(안) 검토 및 심의
3. 교육과정위원회
 - 전공능력심의: 각 학과가 도출한 전공능력(안) 심의
4. 교무위원회
 - 전공능력(안) 확정

(별첨3) 학과별 전공학점 및 졸업학점(개정 2023.08.01.)

- 편입생의 복수.부전공 학점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이수

<신학과>

구분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24-	24	40	21	36	120
	2019 -2023	18	40	24	36	120
	2017 - 2018	20	40	24	36	120
	2013 - 2016	20	58	-	-	130
	- 2012	20	58	-	-	140
편입생	2024-	-	40	21	36	60
	2017 -2023	-	38			60
	2013 - 2016	-	50			65
	- 2012	-	59			68

<선교학부>

*사회복지전공

구 분	학번구분	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24-		24	40	21	36	120
편입생	동일계열	2024-	-	30	21	36	60
	비동일계열	2024-	-	40	21	36	60

※사회복지사 자격증 코스는 관련 전공 17과목(51학점) 이수

*상담·영어전공

구분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24-	24	40	21	36	120
편입생	2024-	-	40	21	36	60

*미용전공

구분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24-	24	40	21	36	120
편입생	2024-	-	40	21	36	60

<교회실용음악학부>

구분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24-	24	40	21	36	120
	2019 -2023	18	54	불허	40	120
	2018	20	60	불허	40	120
	2017	20	60	불허	42	120
	2013 - 2016	20	71	-	-	130
	- 2012	20	71	-	-	140
편입생	2024-	-	40	21	36	60
	2019 -2023	-	40			60
	2017 - 2018	-	42			60
	2013 - 2016	-	42			65
	- 2012	-	42			68

<사회복지학과>

구 분	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학점수
				전공	전공	전공	
학부생		2020 - 2023	18	51	불허	51	120
		2019	18	45	불허	45	120
		2017 - 2018	20	45	불허	45	120
		2013 - 2016	20	65	-	-	130
편입생	동일계열	2017 -2023	-	30			60
		2013 - 2016	-	30			65
	비동일계열	2020 -	-	51			60
		2017 - 2019	-	45			60
		2013 - 2016	-	50			65

<상담영어학부>

구분	학번구분	교양	전공학점			졸업이수학점
			단일전공	부전공	복수전공	
학부생	2019 - 2023	18	36	24	36	120
	2017 - 2018	20	40	24	40	120
	2013 - 2016	20	40	-	-	130
편입생	2019 -2023	-	36			60
	2017 - 2018	-	14			65
	2013 - 2016	-	14			65